

-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부담금 지원을 통한 -
「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」

중소기업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

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
- 접수기간 : '26. 2. 10.~12. 31. (예산소진시까지) *평일 9:00 ~ 18:00
- 지원규모 : 출산전후휴가자 고용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45건
- 지원내용 : 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1,000,000원
 - ※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 (건강보험료, 퇴직금 4개월분)
- 지원방법 :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, 휴가 완료 후 지원금 지급

2. 지원요건 및 방법

- 지원 자격

- ▶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▶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
- ▶ '26년 출산전후 휴가자(광주 거주) 발생 및 고용유지

○ 지원 조건(동시 충족)

- ▶ 자동육아휴직 허가(출산·육아휴직 통합 신청): 출산휴가 완료시 육아휴직 부여
- ▶ 임신부 태아검진시간(정기건강진단) 유급 부여

○ 제외 대상

- ▶ 공공기관, 복지기관(비영리기관) 등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보조대상자 : 보육 및 돌봄 인건비 포함
- ▶ 특수고용자 또는 1인사업장 대표
- ▶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
- ▶ 육아휴직기간 중 자발적 복귀한 경우(1개월 미만 사용)
- ▶ 유·사산 휴가 발생한 경우
- ▶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장 폐업한 경우

○ 권고 사항

- ▶ 출산전후휴가자·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유지 및 모·부성권 권리준수
- ▶ 가족친화미인증 기업은 다음연도 가족친화인증 준비 등

○ 세부 사항(※Q&A 필독)

① 적용 예외

법정 출산휴가 미완료의 원인 (근로자 기준)		지원금 지급 여부
비자발적	(기간제)	계약기간까지 지원금 지급
	계약기간만료	계약기간 이후 고용유지시, 해당기간 지원
	해고 등	기지급한 지원금 전액 회수 ※ 경영악화로 사업장 전부 폐업시 예외

② 태아검진시간 실시기준(근로기준법 제74조의2,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)

: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必

임신기간	정기건강진단 횟수
28주까지	임신주수 4주마다 1회
29주~36주까지	임신주수 2주마다 1회
37주이후	임신주수 1주마다 1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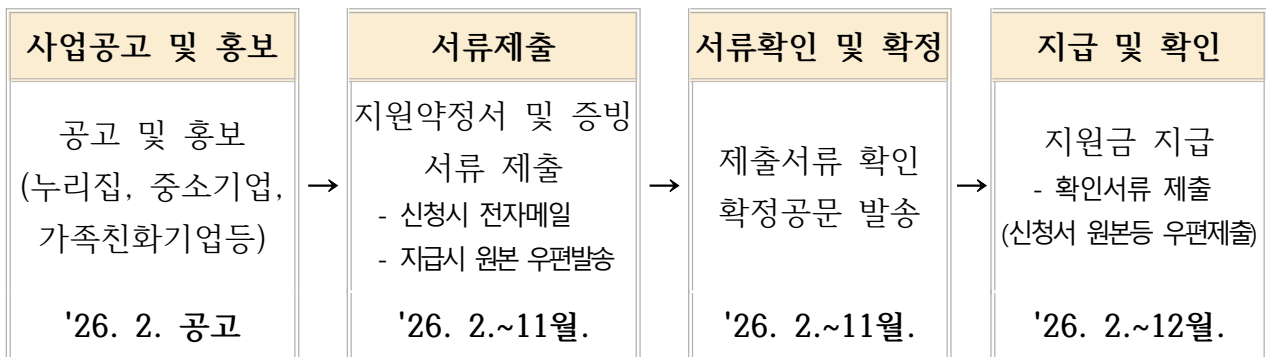
* 필요한 시간(병원 왕복 및 검진시간): 통상 4시간

○ 신청방법

- 문의 및 접수기관 :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☎ 062)613-7982
- 방법 :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→신청서 제출 (이메일접수 lin9958@korea.kr)
- 신청서류 : 첨부 신청서류 참조 (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약정서 등)

	제 출 서 류		비 고
신청 서류	① 기업신청서 (붙임서류)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(지원금 신청기간 출력) ③ 출산휴가·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(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) ④ 출산전후 휴가자 주민등록 등본 (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발급)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		각 1부
완료 지급 신청 서류	자동 육아 휴직	①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사본(내부양식 가능) ②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(내부양식 가능) ③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본(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) ④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(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)	각 1부 우편 제출
	태아 검진 시간	⑤ 태아검진시간 신청서 사본(내부양식 가능) ⑥ 태아검진시간 증빙서류 사본(진료확인서, 영수증 등)	
	기타	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(출산전후 휴가 완료 후 지원금 신청시 출력) ⑧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(회사명의)	

※ 우편제출시, 신청시 전자메일로 제출한 기업신청서(직인날인/원본)와 출산휴가·육아휴직 신청서(사본)를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.



3. 기타유의사항

-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,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,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직장문화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. 지원 세부사항 및 제출사항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관련 지원 방법을 준용하고,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지표를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☎062)613-79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